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 30079호, 2019. 9.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용화 전의 시제품(試製品)에 대한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등록된 제품을 조달청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 30078호, 2019. 9.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취업제공·알선 금지 명문화(제4조의2제1항)

공공입찰·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알선을 포함함.

나.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현행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의2제2항 삭제, 제52조제1항)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추정 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을 공사의 성질·규모 등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방법으로 공사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춤.

다.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현행 제15조 및 제43조제6항 삭제)

종전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대해 그 계약체결을 거부한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 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사고예방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공공 공사현장의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86조제6항제1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함.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 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등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 30074호, 2019. 9.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원, 학교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에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 30072호, 2019. 9.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 30076호, 2019. 9. 1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을 동일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임용기간이 5년에 도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하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에 대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순위를 정하지 않고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35호, 2019. 8. 2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0호, 2019. 8. 2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에 지장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가축·축산물 거래 시 각종 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산물 관련 전자민원창구를 설

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 30058호, 2019. 8. 2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며,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

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다.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4항).

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준수할 사항에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2호).

마. 의료법인에 두는 임원의 수, 임기, 결격사유,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바.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제67조).

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87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